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30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윤준병 · 문대림 · 송옥주
임호선 · 주철현 · 박용갑
이병진 · 유동수 · 임미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6월 4일 출범하였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인하여 이재명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준비 중임.

특히, 이재명 정부는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 등을 새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잡고 있음.

이에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

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여 AI,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기능 분산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외교통상부 및 행정안전부”로,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및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 중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총리의”를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획예산처) 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로, “국토교통부에는”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는”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4. 외교통상부

12. 산업부

15. 기후에너지부

제27조의 제목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를 “화폐”로, “관세·국제금융”을 “관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2명을 둘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를 “산업부장관은 산업”으로, “에너지·지하자원”을 “지하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기후에너지부) ① 기후에너지부장관은 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국제금융에 관한 사무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교부장관의 소관사무	외교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외교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후에너지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후에너지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또는 금융위원회
외교부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 산업부 또는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대

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
공무원

2. ~ 5. (생략)

⑦ ~ ⑩ (생략)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략)

② 차관(제29조제2항 · 제34조 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⑥

1. 외교통상부

2. ~ 5.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0조
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통상
부 및 행정안전부-----

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
장·차관·청장·차장·실장·
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
·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생략)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략)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생략)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⑤ (생략)

<신설>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

-----3명-----.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 재정경제부장관-----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재정경제

부장관-----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

임하는 부총리의-----

-----.

제22조의2(기획예산처) ① 예산·

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

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

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

---.

1. 재정경제부

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
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생략)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
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생략)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
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
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
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생략)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
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
다.

-----.

② 재정경제부-----
-----.

③ -----

-----재정경제부장관-----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재정경제부장관
-----.

⑥ (현행과 같음)

⑦ -----

-----재정경제부장
관-----.

⑧ (현행과 같음)

⑨ -----

-----재정경제
부장관-----
-----.

⑩ (생 략)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

-----.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2명을 둘 수 있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8조(산업부) ① 산업부장관은 산업-----

-----지하자원-----
-----.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생략)

제40조(환경부) ① (생략)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삭제>

④ -----

-----산업부장관-----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40조의2(기후에너지부) ① 기후에너지부장관은 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u>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	--------------------------